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이 자료를 통하여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이용균 전화 054-429-4224 팩스 054-429-4675

보도자료 2020. 12. 2.(수)

강도살인 피고인의 집 마당에 묻혀있던 고액 현금 다발의 출처 제 목 추적하여. [현대판 노예 사건]의 피해자로 보도된 지적장애인 으로부터 7.500만원을 편취한 [준사기] 혐의 밝혀 추가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□ 그제 [11. 30. (월)]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이용균)는, 2020. 3.경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행전말을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(항소심 계속중)에 대하여,
- □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강도살인 피해금 2.000만원과 함께 묻혀있던 6,000만원 상당 현금 다발에 은행 띠지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또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에 착안, 위 현금 출처 등을 수사한 결과.
- □ [현대판 노예사건]으로 보도된 지적장애인이 14년치 임금 상당의 거액의 민사배상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대신 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배상금 중 7,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그 중 6,000만원을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. 준사기죄로 기소하였음
 - ※ 검찰 수사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금을 전액 반환받음으로써 피해 전부 회복되었음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**피고인** : A○○(5*세, 택시기사)
 - ※ 2020. 3.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, 2020. 9. 징역 30년 선고(1심)
- **피해자** : B○○(5*세, 지적장애인)
 - ※ 지적장애인인 위 피해자는 14년간 농장일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[현대판 노예사건]의 피해자로 2016. 2.경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음
 - ※ 그 후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하여, 2019. 9.경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 약 1억 5,000만원 (민사배상금)을 받음
- 공소사실 요지 준사기
 - 2019. 9. 9.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,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보도된 피해자가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민사배상금 약 1억 5,000만원 중 7,500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

Ⅱ 수사 경과

O 2020. 3. 7.	피의자의 집 마당에서 강도살인 피해자의 현금 2,000만원과 함께 묻혀있는 현금 6,000만원 다발 발견
O 2020. 3. 30.	강도살인 사건 구속 기소
○ 2020. 4. ~ 11.	계좌·전표추적 등 현금 6,000만원 출처 수사
O 2020. 11.	피의자, 가족 통해 피해자에게 7,500만원 반환
	준사기죄로 불구속 기소(별건 강도살인으로 구속 수감중)